

대상	지원자격	제출서류
신체적 배려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6급 이상을 받은 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원본(등급 및 담당자 연락처 기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 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원본(등급 및 담당자 연락처 기재)
경제적 배려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가구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가구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자활사업에 참여 차상위 가구 구성원	○ 본인의 해당 증명서 원본 1부(담당자 연락처 기재)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장의 「수급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가구 또는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가구 증명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자기확인서(고려대 소정양식) 1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의 자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또는 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 본인의 해당 증명서 원본 1부(담당자 연락처 기재)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장의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서」 제출 ▶ 단,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로서 위 확인서 같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자기확인서(고려대 소정양식) 1부
사회적 배려대상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자*	○ 관련 증명서(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기타 보훈관계법령상 교육지원대상 자격 확인원 등) 1부 (등급, 담당자 연락처 기재) ○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본인인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 확인원 및 호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경제적 여건 취약기준 증빙서류」(공통, 아래 참조)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으로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자*	○ 관련 증명서(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기타 보훈관계법령상 교육지원대상 자격 확인원 등) 1부 (등급, 담당자 연락처 기재) ○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에 한해 본인이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 확인원 및 호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경제적 여건 취약기준 증빙서류」(공통, 아래 참조)
	해당 법령에 의해 규정된 기타 보훈관계 법령의 교육 지원 대상자 또는 그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자*	○ 관련 증명서(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기타 보훈관계법령상 교육지원대상 자격 확인원 등) 1부 (등급, 담당자 연락처 기재) ○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에 한해 본인이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 확인원 및 호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경제적 여건 취약기준 증빙서류」(공통, 아래 참조)
	농·어촌지역 출신자-「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농·어촌)지역 소재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졸업생은 제외)로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자*	○ 중·고교 교육과정 졸업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담당자 연락처 기재) ○ 「경제적 여건 취약기준 증빙서류」(공통, 아래 참조)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담당자 연락처 기재) ○ 학력인정확인서 1부(담당자 연락처 기재) ○ 「경제적 여건 취약기준 증빙서류」(공통, 아래 참조)
	아동복지시설 재원자-「아동복지법」 제50조와 동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로, 동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 재원경력자 중 그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자*	○ 아동복지시설 재원경력 사실확인서(담당자 연락처 기재) ○ 아동복지시설 기관장 또는 소속 사회복지사의 추천서(담당자 연락처 기재) ○ 아동복지시설 인·허가증 사본 ○ 「경제적 여건 취약기준 증빙서류」(공통, 아래 참조)
	다문화가족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족의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자*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1부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 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또는 귀화증명서 1부(담당자 연락처 기재) ○ 「경제적 여건 취약기준 증빙서류」(공통, 아래 참조)
참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부/모 보호대상자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자*	○ 부/모 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담당자 연락처 기재) ○ 「경제적 여건 취약기준 증빙서류」(공통, 아래 참조)
	<p><b>*사회적 배려 유형의 「경제적 여건 취약기준」 증빙서류(공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li> <li>○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 배우자, 부모 포함 가구원 전부, 최근 3년)」 및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증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li> <li>○ 「재산세(국세·지방세) 과세(납세) 증명서」 또는 「사실증명」(납세사실 없는 자) 1부(본인·배우자 및 보호자 포함 가구원 전원 최근 3년간)</li> <li>○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 있는 자), 「소득금액 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 또는 「사실증명원」(종합소득이 없는 자, 세무서)」 각 1부(본인·배우자 및 보호자 포함 가구원 전원 최근 3년간)</li> <li>○ 자기확인서(고려대 소정양식) 1부</li> </ul> <p><b>*가구 정의:</b>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개별가구로서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기본단위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를 의미</p> <p>※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지원자나 부모 중 한 명만 있거나,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 나머지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까지 각 1부 제출 ※ 「재산세 과세(납세)증명서」는 국세 포함 납부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증명서를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하여 생계, 주거를 같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증빙서류 제출범위에서 제외할 경우는 그에 대한 관련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함.</p>	